비밀유지 계약서

­­­­­­­­­­­ 주식회사 대웅제약과 ­­­­­\_\_\_\_\_\_\_\_\_\_\_\_\_\_\_\_\_\_\_\_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대웅제약과 ­­­­­\_\_\_\_\_\_\_\_\_\_\_\_\_\_\_\_\_\_\_\_이 상호간 *‘물질 또는 과제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제2조에서 명시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권리가 있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② 전항의 입증책임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1조의 목적 및 기타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복제, 수정 등 기타 계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비밀정보” 공개에 관해 “본 계약”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거나 이에 못지않은 비밀보호의무에 대한 규제를 담은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 및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도 “비밀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상호간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받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 증여, 양도하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제5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이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 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4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및 협의중단, 계약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이 계약 종료 후 [ 10 ]년간 유효하다.

**제7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 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정보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1.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수정물도 포함)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 모두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 보고서,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과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는 제4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 “정보제공자”에게 금 [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전항의 위약벌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의 임직원, 대표자 및 대리인 또는 연구원 및 대학원생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11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위탁,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그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2조 (당사자의 관계)**

“본 계약” 체결은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특정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 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및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이 당사자간의 어떠한 대리관계, 파트너쉽, 사업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제13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14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15조 (분쟁해결)**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당사자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반상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대웅제약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 .

|  |  |
| --- | --- |
| 상호: 주식회사 대웅제약 | 상호: |
| 주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12 (삼성동) | 주소: |
| 대표이사 이 종 욱 (인) | 대표자 |